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2년 11월



Highlights in this issue:



조세행정

- 초과 납부 세금 및 이자에 대한 환급
- 국가 예산에 납세 의무수행에 대한 인증절차

간접세 ("VAT")

- 본사와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건설활동에 대한 VAT 신고
- VAT 세율을 잘 못 적용한 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한 세무신고서류 조정
- 보상금에 대한 VAT 및 계산서
- 수출가공구역에 위치한 기업에 기계 및 장비 임대 활동에 대한 VAT
- 기계 및 장비로 자본 출자에 대한 VAT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에서 상표 사용권을 제공하므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한 FCWT
- 포워드 계약 및 옵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법인소득세 ("CIT")

- 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근 수당
- 무역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CIT 인센티브 적용 받을 수 없음

개인소득세 ("PIT")

- 해외보험료에 대한 PIT
- 선물 및 수상에 대한 PIT 과세소득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안내
- PIT 확정신고 안내
- PIT 신고서 제출 안내

무역 및 관세

- 내국 수출입에 대한 관세절차
- 관세총국의 내국 수출입에 대한 안내
- 수출생산을 위해 보세창고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처리 및 관세모드의 사용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조세행정 지침 문서

초과 납부 세금 및 이자에 대한 환급

기업이 조세 위반처리 결정에 따라 세금, 벌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한 후 법원에서 제재결정에 대한 회사의 항소의 결과를 인정할 경우 기업과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금, 벌금 및 연체이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2년 10월 13일 제3783/TCT-KK호 OL)

국가 예산에 납세 의무수행에 에 대한 인증절차

납세자는 국가예산에 납세 의무수행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경우 제80/2021/TT-BTC호 시행 규칙의 부록 I에 첨부된 제01/DNXN호 양식으로 신청서를 세무당국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1월 4일 제53415/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근 수당

기업은 직원을 야근시킬 경우 유관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해 승인된 야근에 따른 수당비용이 CIT목적상 공제될 수 있다.

(박닌 세무국의 2022년 11월 8일
제/3674/CTBNI-TTHT호 OL)

무역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CIT 인센티브 적용 받을 수 없음

지역별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이 자산 증가를 위해 자본 증자 또는 투자확장 없이 무역활동을 추가하면 추가된 무역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박닌 세무국의 2022년 10월 31일
제/3593/CTBNI-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건설활동에 대한 VAT 신고

회사가 본사와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하도급 건설 계약자인 경우 공사 수행 지역의 현지 세무국에 이러한 공사 및 공사 항목에 대한 VAT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1월 4일 제53393/CTHN-TTHT호 OL)



VAT 세율을 잘 못 적용한 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한 세무신고서류 조정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 납부하는 회사가 창고, 사무실 임대 활동을 영위하고 VAT세율을 잘 못 적용하면 세율 조정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와 고객사는 2019년 6월 13일 제38/2019/QH14호 조세행정법 제47조 1항 및 2020년 10월 19일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오류가 있는 과세기간의 세금 신고서를 수정해야 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2년 11월 1일 제3539/CTHPH-TTHT호 OL)

보상금에 대한 VAT 및 계산서

회사가 임차한 창고의 누수로 인해 손상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VAT 및 계산서를 처리한다:

- VAT: 회사는 법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증빙서류를 충분히 가지면 창고 임차료의 매입 VAT를 공제할 수 있다; 및
- 계산서: 회사는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자로 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수금표를 발행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2년 10월 20일 제3359/CTHPH-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수출가공구역에 위치한 기업에 기계 및 장비 임대 활동에 대한 VAT

다음과 같은 경우:

- 회사는 수출생산을 위해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였다, 및
- 수입 단계에서 VAT를 납부했고 이 기계에 해당하는 VAT를 환급 받았다, 그이후
- 수출가공구역에 위치한 기업에 운용리스방식으로 이 기계장비를 임대했다

회사는 수출가공구역에 위치한 기업과의 기계장비 임대 계약서, 은행을 통해 결제증빙서류 및 법규정에 따른 기타 합법적인 증빙서류가 충분히 갖추어 진 경우 VAT 0%를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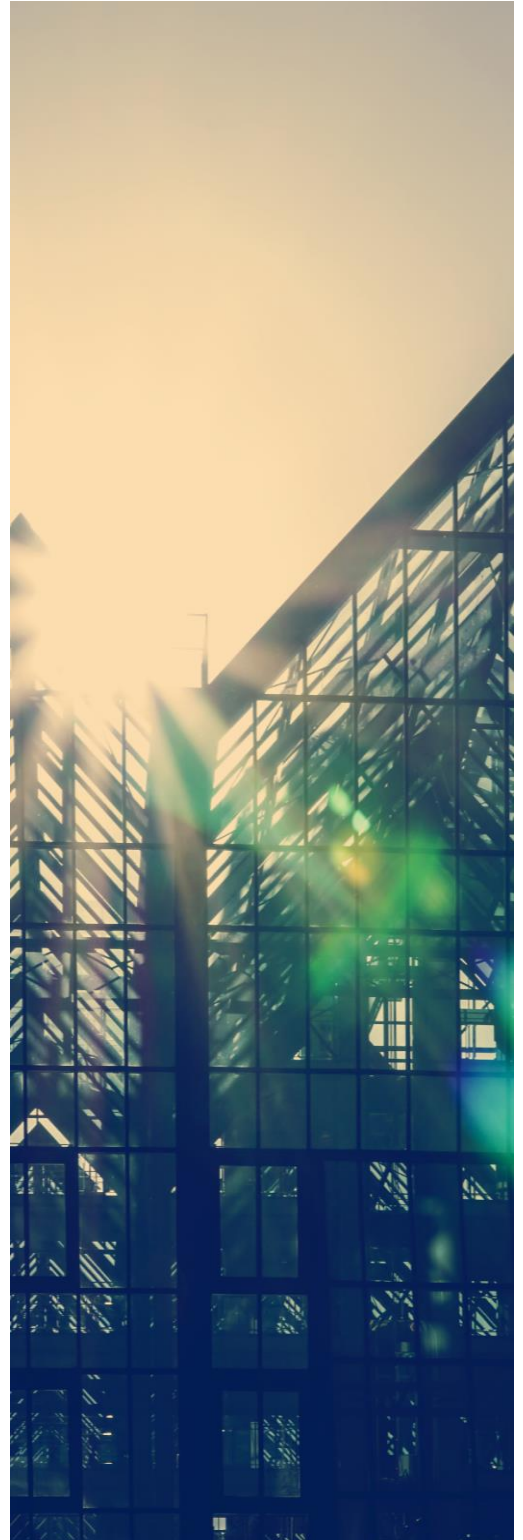
(하이퐁 세무국의 2022년 10월 25일 제464/CTHPH-TTHT호OL)

기계 및 장비로 자본 출자에 대한 VAT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납부한 회사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계장비로 출자하는 경우:

- 회사가 다른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구매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매입 VAT 공제 조건 및 규정에 따른 자산출자에 대한 증빙서류조건을 충족하면 매입 VAT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사는 출자금을 받는 법인에 VAT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VAT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자본출자 확인서, 자산 인수인계 기록서 및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 기록서 및 자산 출처 증명서류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2년 10월 7일 제3121/CTHPH-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해외보험료에 대한 PIT

베트남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만 받고 해외에서 일하지 않고 해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외에서 기여한 보험료가 베트남 PIT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Vinh Phuc 세무국의 2022년 7월 22일
제6017/CTVPH-HKDCN호 OL)

선물 및 수상에 대한 PIT 과세소득

회사가 종업원에게 현물로 선물을 주고 해당 선물이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 제111/2013/TT-BTC호 시행령 제 2조 10항에 규정된 목록에 해당되지 않으면 PIT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의해 주최된 게임, 콘테스트 및 기타 우승 상금의 형태에 참여하여 현물 수상을 받을 경우 이는 상금소득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따라 PIT 과세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8월 16일
제4022/CTHN-TTHT호 OL)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

- 직원의 할머니가 퇴직 연령에 해당한다 (소득이 없거나 해당 연도의 모든 원천 소득에서 월 평균 소득이 100만동을 초과하지 않다).
- 또한, 근로자가 본인의 할머니를 직접 양육한 것에 대하여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지당국에 의해 인증 받았으며 법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을 양육할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 또는 출생 증명서 사본 및 합법적인 서류등을 충분히 가진다.

이경우에 근로자가 베트남 PIT 목적상 할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등록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0월 27일
제51877/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PIT 확정신고 안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PIT 확정신고를 수행하면 (직원의 위임이 있음) 직원의 세금 코드가 있어야 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직원의 주민등록증 번호로만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제105/2020/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코드 등록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규정에 따라 PIT 수정 신고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0월 20일 제50820/CTHN-TTHT호 OL)

PIT 신고서 제출 안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및 개인은 해당 월/분기에 PIT 원천징수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분기에 대한 PI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Ba Ria Vung Tau 세무국의 2022년 11월 9일 제10087/CTBRV-K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상표 사용권을 제공하므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한 FCWT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외국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지적소유권법에 따라 FCWT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 과세소득에 CIT 10%; 및
- 과세소득에 VAT 10% (credit method 적용한 경우) 또는 5% (deemed method 적용한 경우)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0월 27일 제 51874/CTHN-TTHT호 OL)

포워드 계약 및 옵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물품거래소에서 포워드 계약 및 옵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물품 판매 활동은 법규정에 따라 파생금융서비스로 확인될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받은 소득이 VAT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 매출에 세율 2%로 CIT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2년 9월 9일 제3334/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정부 문서



내국 수출입에 대한 관세절차

2022년 10월 25일에 Trang Bang 산업단지의 관세국은 내국 수출입에 대한 관세절차에 대한 제3140/TB-HQTB호 통보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외국 무역자의 지정에 따라 내국 수출입 형태로 관세 신고서 등록 시 베트남 기업은 그 외국 무역자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 활동이 없고 대표 사무소, 지사가 없음).
- 외국 무역자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 기업은 규정에 따라 내국 수출입 관세 신고 수행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 상기 조건을 충족되지않 지만 통관이 이미 완료된 사례를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기업이 검토하고 관세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은 외국 무역자의 지정에 따라 내국 수출입 형태로 관세 절차 수행 시 베트남 현지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지정된 기업의 투자허가서에 표기된 투자자가 외국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후에
- 물품 인도/수령을 지정하는 외국 무역자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작성한다. (요청 받은 시 현지 관세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Trang Bang 산업단지의 관세지국의 2022년 10월 25일 제3140/TB-HQTB호 통보)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관세총국의 내국 수출입에 대한 안내

2022년 10월 17일에 관세총국은 내국 수출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4357/TCHQ-GSQL호 OL을 공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은 외국 무역자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은 외국 무역자에 대한 지침은 2017년 6월 12일 제05/2017/QH14호 대외무역관리법 제3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현지 기업 (관세 신고자)은 규정에 따라 외국 무역자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은 외국 단체, 개인의 수출입권 수행

관세총국은 Binh Duong 관세국에 2007년 5월 31일 제90/2007/ND-CP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10월 17일 제 4357/TCHQ-GSQL호 OL)

수출생산을 위해 보세창고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처리 및 관세모드의 사용

수출생산목적으로 보세창고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된 물품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수입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비관세구역에서 수출생산을 위해 자재/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모드 " E31 – 수출생산용 수입자재"가 사용된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2년 10월 18일 제2843/HQTPHCM-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